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송파구보

송파구 홈페이지 | www.songpa.go.kr

2026. 11. 5.(목) 제20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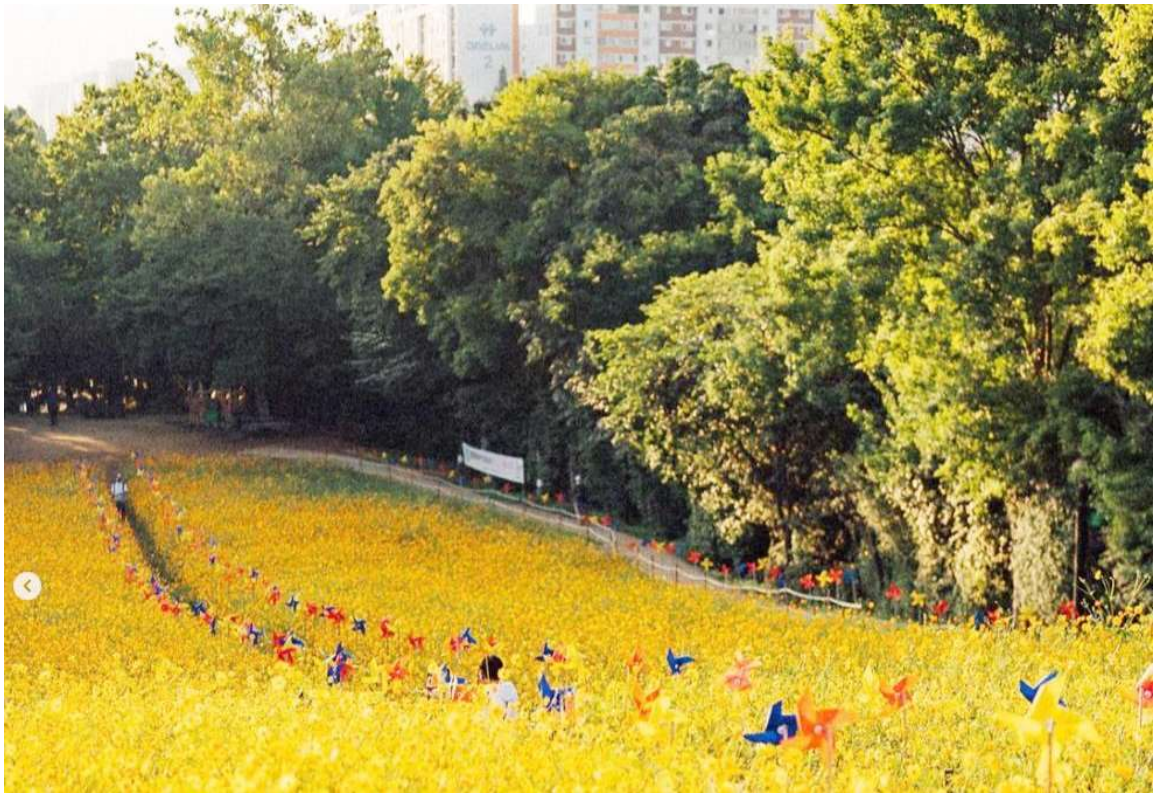

※ 송파구보 발행 안내

· 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 게재합니다.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송파구 Songpa-gu

발행인 : 송파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02-2147-2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차 례

◉ 조 례

제184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184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18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24
제18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고 시

제132호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 51
제133호 도시관리계획(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4

조 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84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 강 석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상 5년 이내”를 “5년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 개폐 현황보고(제46조제1항 관련)

송파구

조 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 류	제정( ), 개정(O), 폐지( )		
제 안 자	구청장(O), 의회의원( )		
조례 · 규칙심의회	2026. 9. 30.		
의 회 의 결 일	2026. 10. 21.	이 송 일	2026. 10. 22.
공포기한(예정일)	2026. 11. 10.	재의요구기한	2026. 11. 10.
근 거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자치구소관부서	여성보육과		
시 주 관 부 서	영유아담당관		
제정 · 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 및 위임된 위탁기간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요약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에 따른 위원회 기능 조항 삭제 (안 제4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따른 위탁기간 범위 현행화 (안 제14조)		
검 토 의 견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상 5년 이내”를 “5년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기능) 1. ~ 4. (생략)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기능)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14조(위탁기간)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4조(위탁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5년 미만---------- 1. ~ 2.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4. 7. 9.>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2024. 6. 25.>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5. 11. 2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작성자 : 주 무 관 행정7급 박 슬 빈
- 검토자 : 공공보육팀장 행정6급 윤 정 현
- 결재자 : 여성보육과장 행정5급 양 선 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84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 강 석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으로, “관련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을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으로,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으로, “정보화 관련”을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각각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내 · 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시행”을 “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재난 · 재해”를 “재난 ·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를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이용교육”을 “정보이용 및 디지털역량 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수강횟수”를 “수강 횟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 개폐 현황보고(제46조제1항 관련)

송파구

조 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종 류	제정( ), 개정(O), 폐지( )		
제 안 자	구청장( ), 의회의원(O)		
조례 · 규칙 심의회	2026. 10. 29.		
의 회 의 결 일	2026. 10. 21.	이 송 일	2026. 10. 22.
공포기한(예정일)	2026. 11. 5.	재의요구기한	2026. 11. 10.
근 거 법 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자치구소관부서	첨단도시과		
시 주 관 부 서	디지털정책과		
제정 · 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디지털포용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요약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규정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 다.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라. 그 밖에 관련 규정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표현을 정비함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0조)		
검 토 의 견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으로, “관련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을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으로,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으로, “정보화 관련”을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각각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내 · 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을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시행”을 “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재난 · 재해”를 “재난 ·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를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이용교육”을 “정보이용 및 디지털역량 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수강횟수”를 “수강 횟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 따른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 관계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 ----------.
② 구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지능정보화 교류) ① (생 략)	제10조(지능정보화 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 · 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1. ---------- 국내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생 략)	제12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 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①----------「보안업무규정」----------재난 · 재해 -----------.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하는 자에게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규정」----------.
제15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3. ---------- 정보이용 및 디지털 역량 교육----------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생 략)	제16조(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 ② (생 략)	제20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하거나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 수강 횟수----------. ----------.

관 련 법 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삭제 <2025. 1. 21.>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적 · 사회적 ·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 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 · 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 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 · 조사 · 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필요시 조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2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 및 지원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임기제8급 신민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8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 강 석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

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진흥

제5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의 발굴 · 개발 및 연계
2. 관광콘텐츠의 개발 · 운영 및 관광상품의 개발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정보의 제공 및 관광안내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 지급 ·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진흥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안내 및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 접수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등의 홍보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 관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민 · 관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관광 관련 기관 · 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 · 관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
2. 관광진흥사업 및 민 · 관 협력사업의 발굴 · 추진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관광특구

제10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구의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잠실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관광특구진흥계획) 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특구 활성화) 구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와 구의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2. 관광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3. 그 밖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관광정책위원회

제14조(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관광 · 문화 · 지역경제 ·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기관 · 단체의 관계자
3. 관광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8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 강 석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협력관”을 “총괄조정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원협력관”을 “총괄조정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 · 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지원센터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 개폐 현황보고(제46조제1항 관련)

송파구

조 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 류	제정(O), 개정( ), 폐지( )		
제 안 자	구청장( ), 의회의원(O)		
조례 · 규칙 심의회	2026. 10. 29.		
의 회 의 결 일	2026. 10. 21.	이 송 일	2026. 10. 22.
공포기한 (예정일)	2026. 11. 5.	재의요구기한	2026. 11. 10.
근 거 법 령	○ 「관광진흥법」 제2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7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자치구소관부서	관광진흥과		
시 주 관 부 서	관광정책과		
제정 · 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송파구 전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 마케팅 등 지역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지역별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관광 정책의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특구 활성화 및 관광정책위원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요약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사항(안 제1조~제4조) 나.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다. 관광진흥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라. 관광안내소의 설치 · 운영(안 제8조) 마. 민 · 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바. 잠실관광특구 및 진흥계획(안 제10조~제11조) 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안 제12조) 아.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및 세부기준(안 제13조) 자.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7조)		
검 토 의 견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진흥

제5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의 발굴 · 개발 및 연계
2. 관광콘텐츠의 개발 · 운영 및 관광상품의 개발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정보의 제공 및 관광안내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 지급 ·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진흥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안내 및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 접수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등의 홍보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 관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민 · 관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관광 관련 기관 · 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 · 관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
2. 관광진흥사업 및 민 · 관 협력사업의 발굴 · 추진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관광특구

제10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구의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잠실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관광특구진흥계획) 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특구 활성화) 구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와 구의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2. 관광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3. 그 밖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관광정책위원회

제14조(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관광 · 문화 · 지역경제 ·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기관 · 단체의 관계자
3. 관광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첨1】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 숙박 ·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 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 문화 · 예술 ·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 · 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 · 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4. 10. 22.>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관광특구의 지정 · 취소 · 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 · 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시 ·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 · 체육 · 숙박 · 상가 · 교통 · 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별첨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필요시 조치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임기제 8급 김윤후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 개폐 현황보고(제46조제1항 관련)

송파구

조 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종 류	제정( ), 개정(O), 폐지( )		
제 안 자	구청장(O), 의회의원( )		
조례 · 규칙심의회	2026. 9. 30.		
의 회 의 결 일	2026. 10. 21.	이 송 일	2026. 10. 21.
공포기한(예정일)	2026. 10. 29.	재의요구기한	2026. 10. 29.
근 거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제15조		
자치구소관부서	도시안전과		
시 주 관 부 서	재난안전정책과		
제정 · 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 시행(2026. 7. 22.)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운영 근거를 확립하고, 기존 조문 내용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요약	가.「공연법」 상 신고 대상인 공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상 심의 대상인 축제와 혼동될 수 있어 일부 호 수정(안 제14조제2항제3호)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 수정(안 제19조제2항, 안 제20조)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에 따른 중앙합동재난 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라.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중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 소통에 관한 사항 반영 (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검 토 의 견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협력관”을 “총괄조정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원협력관”을 “총괄조정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지원센터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조정 4.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4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안전관리계획에 -----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 · ④ (생 략)	제19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총괄조정관----------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직무대행) ---------- ---------- --------- 총괄조정관 ------- ----------
<신 설>	제21조의2(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 행	개 정 안
	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 · 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지원센터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①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7조(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 · 구급 · 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은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작성자 : 주 무 관 행정7급 김 동 빈
- 검토자 : 재난관리팀장 행정6급 안 성 진
- 결재자 : 도시안전과장 행정5급 엄 귀 대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32호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1필지 / 7,549.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길선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13, 3층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6. 11. 03.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 수	높이(m)	건축물의 용도
7,549.6㎡	19.26%	257.43%	35,629.8798㎡	지하3층/ 지상25층	76.62m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59.8340	59.6294	59.9008	84.7707	84.8025	84.8891	84.9573	84.9533	84.9724	115.6541
계	아파트	2	191	19	23	23	68	24	9	4	16	4	1
분양	아파트	2	191	19	23	23	68	24	9	4	16	4	1
임대	-	-	-	-	-	-	-	-	-	-	-	-	-

8.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계	59.8340	59.6294	59.9008	84.7707	84.8025	84.8891	84.9573	84.9533	84.9724	115.6541
계	191	19	23	23	68	24	9	4	16	4	1
토지등소유자	160	14	16	16	60	24	7	4	14	4	1
보류지	2	-	2	-	-	-	-	-	-	-	-
일반분양	29	5	5	7	8	-	2	-	2	-	-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의제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12호

11. 기타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89)에 비치 보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33호

도시관리계획(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송파구 고시 제2016-68호(2016.7.1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잠실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7호(2021.6.24)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송파구 고시 제2021-228호(2021.11.18)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0호(2021.12.16.)로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송파구 고시 제2022-28호(2022.1.27.)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송파구 고시 제2023-144호(2023.11.23.) 및 송파구 고시 제2023-146호(2023.11.30.)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5-277호(2025.5.2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고시, 송파구 고시 제2025-114호(2025.12.4.)로 도시관리계획(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송 파 구 청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	2,482,662.3	-	2,482,662.3	서울시고시 제2025-277호 (25.5.22)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09	25 (12.5)	보조 간선도로	600.0	잠실동 (중2-123)	잠실동 (광2-20)	일반 도로	-	건설부 고시제8호 ('76.1.21.)	-
변경	대로	3	109	25~39.5 (27)	보조 간선도로	600.0	잠실동 (중2-123)	잠실동 (광2-20)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A	25~28	간선도로	811.1	신천동길 (신천동 17-5)	신천동길 (신천동20-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413	20	간선도로	310.0	잠사길 (신천동17-6)	잠사길 (신천동17-6)	일반 도로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사항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7호(2025. 5. 22)」 도로 류별 오기정정(중로2-413 → 중로1-41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번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09	좌동	●도로변경 - 위치 : 잠실동 중로 2-123~ 광로 2-20(변경없음) ※신천동 17-6번지 일대 우회차로 반영 - 규모(폭원) : 대로3-109 폭원변경 25m(12.5m)→ 25m~39.5m(27m) - 연장 : 600m (변경없음) - 면적 : 증) 570.9㎡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시 누락된 대로 3-109에 관하여 우회차로를 반영함에 따른 도로계획시설(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나) 지하도로 : 변경없음

다) 철도 : 변경없음

라) 주차장 : 변경없음

1) 공간시설 : 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3) 방재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Ⅱ.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특별계획구역 3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원	75,684.5	-	75,684.5	서고 제2025-277호 (2025.05.22.)	미성·크로바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75,684.5	-	75,684.5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644.4	-	3,644.4	4.8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040.1	-	72,040.1	95.2	-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09	25	보조 간선도로	600.0	잠실동 (중2-123)	잠실동 (광2-20)	일반 도로	-	건설부 고시제8호 ('76.1.21.)	-
변경	대로	3	109	25~39.5 (14.5)	보조 간선도로	600.0	잠실동 (중2-123)	잠실동 (광2-20)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A	25~28	간선도로	811.1	신천동길 (신천동 17-5)	신천동길 (신천동20-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413	20	간선도로	310.0	잠사길 (신천동17-6)	잠사길 (신천동17-6)	일반 도로	-	-	-

※ ( )는 특별계획구역3 내 포함사항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7호(2025.5.22)」 도로 류별 오기정정(중로2-413 → 중로1-41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번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9	좌동	●도로변경 - 위치 : 잠실동 중로 2-123~ 광로 2-20(변경없음) ※신천동 17-6번지 일대 우회차로 반영 - 규모(폭원) : 대로3-109 폭원변경 25m → 25m~39.5m(14.5m) - 연장 : 600m (변경없음) - 면적 : 증) 570.9㎡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시 누락된 대로 3-109에 관하여 우회차로를 반영함에 따른 도로계획시설(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2)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	어린이공원	신천동 17-6 일원	3,644.4	-	3,644.4	서고제2005-399호 (05.12.15)	-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J	송파구 신천동 17-6대 일원	75,684.5	-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공부상면적(㎡)	계획면적(㎡)	
기정	J	J1	송파구 신천동 17-6대	72,802.3	63,567.0	특별계획구역3 (미성·크로바)
		J2		72,802.3	4,369.1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2 (주구중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 역	건폐율	비고
획지1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제3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근린생활시설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21.08.10.)」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고시 제2021-700호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2021.12.16.)」에 따른 주구중심 건폐율 완화(50%이하→60%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획지1	230% 이하	253% 이하	300% 미만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230.00%
					상한용적률 252.88%
					법적상한용적률 299.74%
획지2	250% 이하			-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 고
획지1	제3종 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120m이하)	-
획지2	제3종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30m이하)	-

라)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구역경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공원 서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생태 면적율	30%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만족	-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조경계획 등을 반영하여 녹지공간 확보	-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 개별 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
생활환경	일조	-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북측지역 도로로 구성 일조 영향권 내 주거시설 없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
	경관	Skyline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가로녹시율	○	•상업시설로 조성되어 있음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가로녹시율 증가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순환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보행도로 계획	•주변지역과 연계 도모할 수 있는 동선계획 수립	-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
추가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송파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상 •운영시 도로소음영향 예상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방음창 등)	-

나.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4)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구 분 (전용면적)			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세대수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세대수	계		1,865	100.0	1,667	89.4	198	10.6
	60㎡ 이하	소 계	717	38.4	519	27.8	198	10.6
		49㎡	150	8.0	75	4.0	75	4.0
		51㎡	103	5.5	52	2.8	51	2.7
		59㎡	464	24.9	392	21.0	72	3.9
	60㎡~85㎡이하		829	44.5	829	44.5	-	-
	85㎡초과		319	17.1	319	17.1	-	-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도시 ·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1-3-3),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 후 송파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5)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Ⅲ.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신천동 17-6	75,684.5	-	75,684.5	-

3.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5,684.5	-	75,684.5	1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7,748.4	-	7,748.4	10.2	-
	도로	4,104.0	-	4,104.0	5.4	-
	공원	3,644.4	-	3,644.4	4.8	-
획지	소계	67,936.1	-	67,936.1	89.8	-
	획지1	63,567.0	-	63,567.0	84.0	주택용지
	획지2	4,369.1	-	4,369.1	5.8	주구중심

4. 용도지역 · 지구계획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5,684.5	-	75,684.5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644.4	-	3,644.4	4.8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040.1	-	72,040.1	95.2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9	25	보조 간선도로	600.0	잠실동 (중2-123)	잠실동 (광2-20)	일반 도로	-	건설부 고시제8호 ('76.1.21.)	-
변경	대로	3	109	25~39.5 (14.5)	보조 간선도로	600.0	잠실동 (중2-123)	잠실동 (광2-20)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A	25~28	간선도로	811.1	신천동길 (신천동 17-5)	신천동길 (신천동20-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413	20	간선도로	310.0	잠사길 (신천동17-6)	잠사길 (신천동17-6)	일반 도로	-	-	-

※ ( )는 정비계획구역 내 포함사항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7호(2025.5.22)」 도로 류별 오기정정(중로2-413 → 중로1-41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번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09	좌동	•도로변경 - 위치 : 잠실동 중로 2-123~ 광로 2-20(변경없음) ※신천동 17-6번지 일대 우회차로 반영 - 규모(폭원) : 대로3-109 폭원변경 25m → 25m~39.5m(14.5m) - 연장 : 600m (변경없음) - 면적 : 증) 570.9㎡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시 누락된 대로 3-109에 관하여 우회차로를 반영함에 따른 도로계획시설(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	어린이공원	신천동 17-6일원	3,644.4	-	3,644.4	서고제2005-399호 (05.12.15)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A-1)

구 분		설치기준	법정기준	계획 면적	비고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1,500세대 이상	500.00㎡ 이상	597.48㎡	개방형
	어린이집	1,500세대 이상	725.00㎡ 이상	1,650.48㎡	개방형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	298.00㎡ 이상	1,099.91㎡	개방형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	-	522.08㎡	개방형
	지역문화센터	-	-	527.38㎡	개방형
	다함께 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66.00㎡ 이상	97.63㎡	개방형
	커뮤니티센터	-	-	6,948.33㎡	내부형
	스카이커뮤니티	-	-	558.02㎡	내부형
	게스트하우스	-	-	269.31㎡	내부형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1,795.0㎡ 이상	1,819.06㎡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	-	445.03㎡	조경시설
	소계	-	-	14,534.71㎡	-
부대시설	경비실	-	-	89.82㎡	-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0.0㎡ 이상	293.60㎡	-
합 계				14,918.13㎡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75,684.5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원	14	-	-	14	-	-

8.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3">용적률 (%)</th><th rowspan="2">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상한</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2">기정</td><td>획지1</td><td>63,567.0</td><td rowspan="2">신천동
17-6번지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
이하</td><td>230%
이하</td><td>253%
이하</td><td>300%
미만</td><td>120m 이하
(35층이하)</td></tr>
<tr><td>획지2</td><td>4,369.1</td><td>근린생활시설</td><td>60%
이하</td><td colspan="3">250%이하</td><td>30m 이하
(5층이하)</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td><td colspan="9">•주택공급계획 : 1,865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세대수(세대)</th><th rowspan="2">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정</th><th>변경</th><th>변경후</th></tr>
<tr><td>계</td><td>1,865</td><td>-</td><td>1,865</td><td>100.0</td><td>공공주택(198세대)</td></tr>
<tr><td>60㎡ 이하</td><td>717</td><td>-</td><td>717</td><td>38.4</td><td>공공주택(198세대)</td></tr>
<tr><td>60~85㎡ 이하</td><td>829</td><td>-</td><td>829</td><td>44.5</td><td>-</td></tr>
<tr><td>85㎡ 초과</td><td>319</td><td>-</td><td>319</td><td>17.1</td><td>-</td></tr>
</table>
-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9">•정비계획용적률 252.88% → 법적상한용적률 299.74%</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건축한계선 지정
<table>
<tr><th>구 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비 고</th></tr>
<tr><td>도로 연접</td><td>경계선에서 3m</td><td rowspan="2">도면 참고</td></tr>
<tr><td>서측 공원 연접</td><td>경계선에서 5m</td></tr>
</table></td></tr>
</table>

9.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산정 내용</th></tr>
<tr><td>토지이용계획</td><td>구역면적</td><td>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주택용지)</td><td>계획
정비기반시설</td><td>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td><td>75,684.5㎡</td><td>63,567.0㎡</td><td>7,748.4㎡</td><td>2,882.2㎡</td><td>-</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순부담 면적 : 4,866.2㎡ (순부담률 6.43%)
= 계획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7,748.4㎡ - 2,882.2㎡ - 0 = 4,866.2㎡ (구역면적 6.43%)</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기준용적률 = 230%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지 적용용적률)</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5">•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30% + 22.88% = 252.88%
※ α=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866.2㎡ / 63,567.0㎡ = 0.07655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지 적용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2.88%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4%(300%이하)</td></tr>
<tr><td>재건축 공공주택
건립용적률</td><td colspan="5">•용적률 23.43%(연면적 14,893.75㎡) 이상
[법적상한용적률(299.74%) - 상한용적률(252.88%)] × 0.5 = 23.43%</td></tr>
</table>

10. 재건축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라. 재건축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근거

구분		내용			
상한용적률		· 252.88%			
법적상한용적률		· 299.74%			
재건축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74% - 252.88% = 46.86%			
	증가된 용적률의 50%	· 46.86% × 0.5 = 23.43%			
	의무 연면적	· 63,567.0㎡ × 23.43% = 14,893.75㎡			
재건축 공공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45㎡	67.71㎡	75세대	5,078.25㎡
		51㎡	76.23㎡	51세대	3,887.73㎡
		59㎡ A형	82.98㎡	43세대	3,568.14㎡
		59㎡ B형	83.50㎡	29세대	2,421.50㎡
		∴ 14,955.62㎡ 〉 14,893.75㎡(의무연면적)			

※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계획 및 건립되어 서울특별시에 인수되는 모든 공공기여 공공주택 및 공공주택으로 건립 되는 재건축 공공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합원 분양주택과 동일,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에 매각(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조합원 분양이 없는 경우 주택규모는 일반분양주택에 우선하여 공급한다.

마.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11.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한강변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서울시 경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관계획 수립		-
환경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보	-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수재해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산사태	•해당사항 없음	-
	화재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순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입	-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증가예상 세대수		
			현 황	변 경	증 가
재건축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50세대	1,865세대	515세대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지역	학교보건법 제6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호텔, 당구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설계

- 제안범죄예방을 위해 공간구조론과 범죄예방학을 응용한 CPTED(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 원리를 다양하게 설계전략으로 전환하여 적용

1) CPTED설계 기본원칙

가) 변자연적 감시(surveillance) : 일반인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도로구조·건물배치

나)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범죄인의 접근 차단

다) 영역성(territoriality) : 인도·조경 등을 통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

라) 장소의 이미지(image) : 정돈되고 깨끗한 환경 유지

2) CPTED설계 실행전략

① 분명한 시야선 확보 ② 적합한 조명의 사용

③ 고립지역의 개선 ④ 사각지대의 개선

⑤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⑥ 활동인자 증대

⑦ 영역성 강화 ⑧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⑨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3) 설계내용

가) 분명한 시야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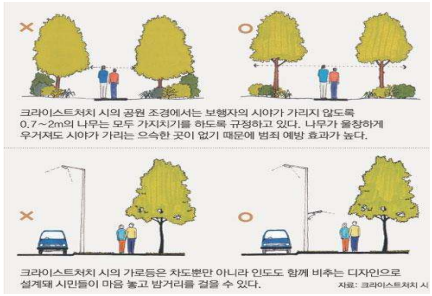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 공원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나) 적합한 조명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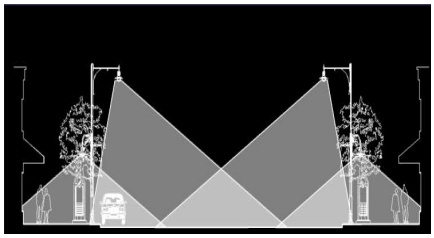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다) 고립지역 개선

–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없애는 설계

라) 사각지대의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마) 대지의 복합적 사용 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 및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바) 활동인자 증대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기회를 감소시킴
예)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 사무실 빌딩에 위치한 레스토랑

사)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아)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자)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나. 여성 친화적 아파트단지 계획

1) 어린이놀이터 우범화 방지설계

- 어린이놀이터 우범화 방지설계 : 접근성이 좋고, 주거중심부 등 개방된 장소에 계획
- 집안에서도 놀이터 광경을 관찰할 수 있는 TV연결 CCTV 설치

2)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

- 설 계 : 미로 지양, 데크형·썬큰 등 적극 도입
- 차량 또는 사람의 동선추적 CCTV 및 조명장치 설치
- 안전 사각지대에 비상벨 스위치 설치 및 추적 CCTV 연계 ⇒ 경비실, 인근 경찰서 온라인 구축
- 엘리베이터 홀 보안시스템 : 비밀번호, 카드 등

3) 단지 내 통행로 탄성재 포장

- 여성과 아동의 통행편의 및 안전 확보
  ⇒ 유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게 시공,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볼라드 설치 지양
  ⇒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틈새 정비 등

4) 단지 내 아동승하차 전용정류장 설치

- 유치원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단지 내 전용정류장 계획

5) 도난 걱정 없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 보안 시건장치를 갖춘 자전거 보관대 설치

6) 동별 공용부분 방어적 공간 계획

- 현 관 : 입구 홀에 창과 CCTV 설치, 바닥은 외부보다 약간 높게 하여 식별 용이하게 함

– 엘리베이터 홀 : 공용 호수를 줄여 이웃간 교류 활성화로 감시 강화 (예 : 계단실형이 범죄예방에 효과)

– 계단실과 경비실 : 투명창을 설치, 서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가시거리 유도

7) 가스배관 등에 침입 방지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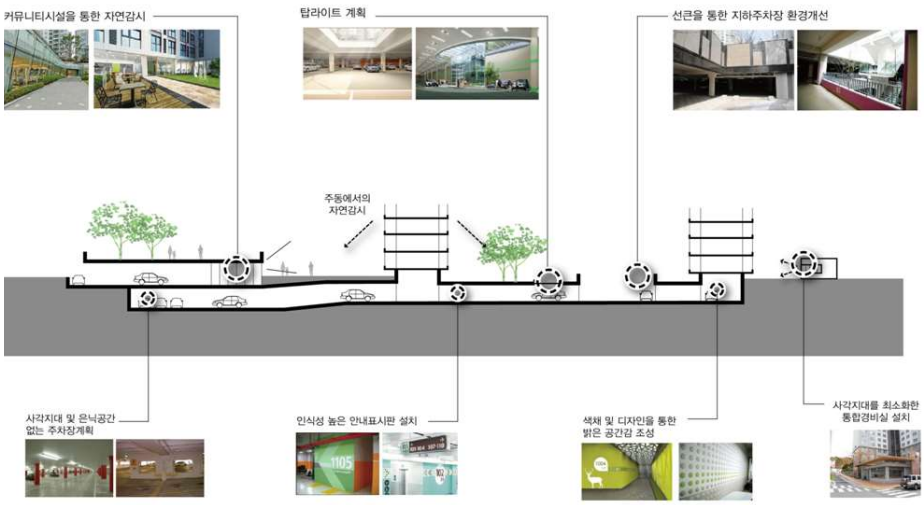

Ⅳ.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5. 가구 및 획지 계획 결정도
6. 정비계획 결정도
7.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기정/변경)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 주거사업과(☎02-2147-289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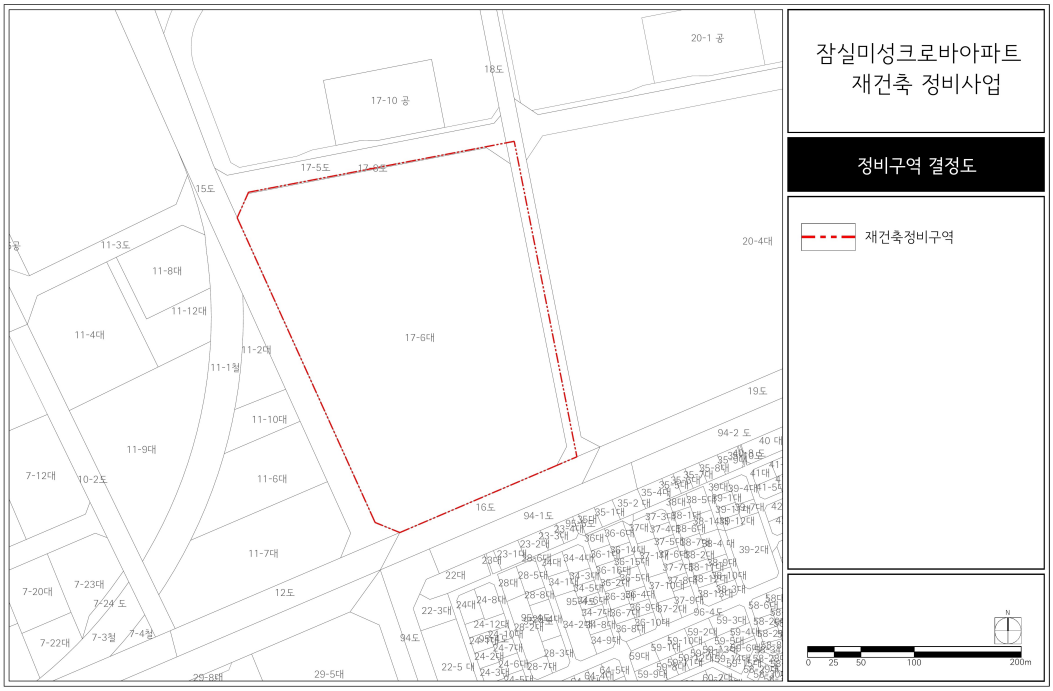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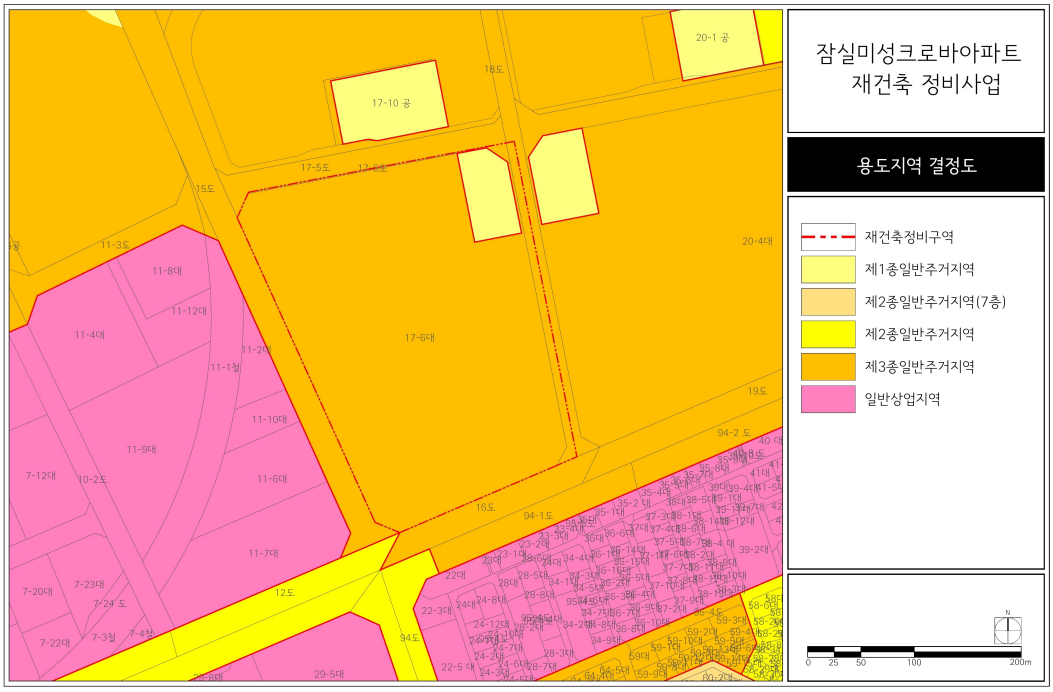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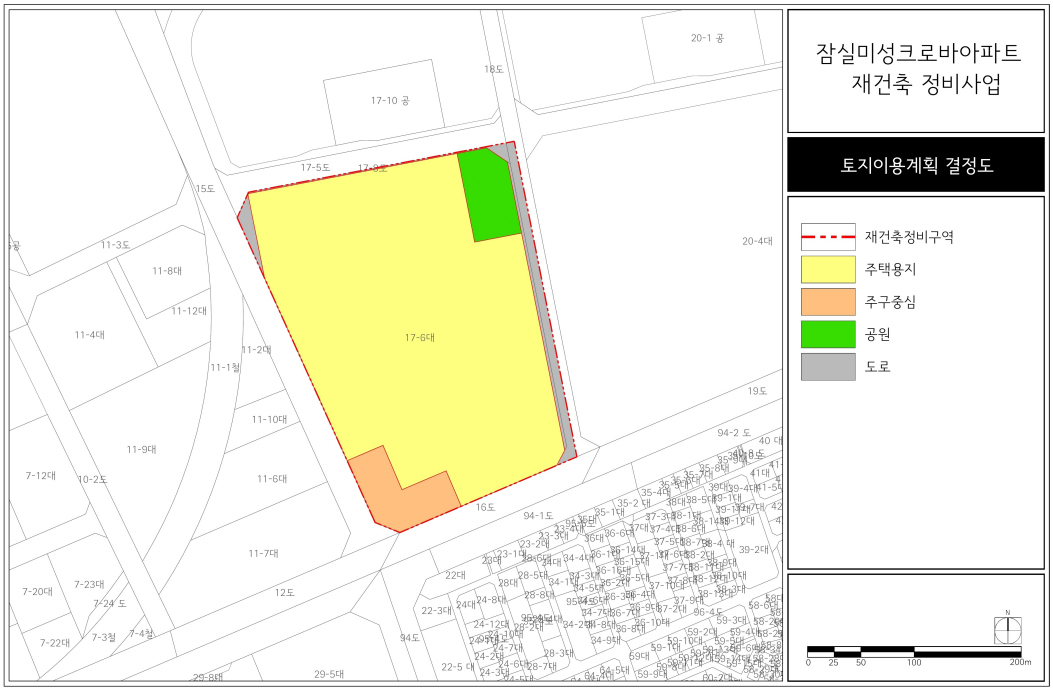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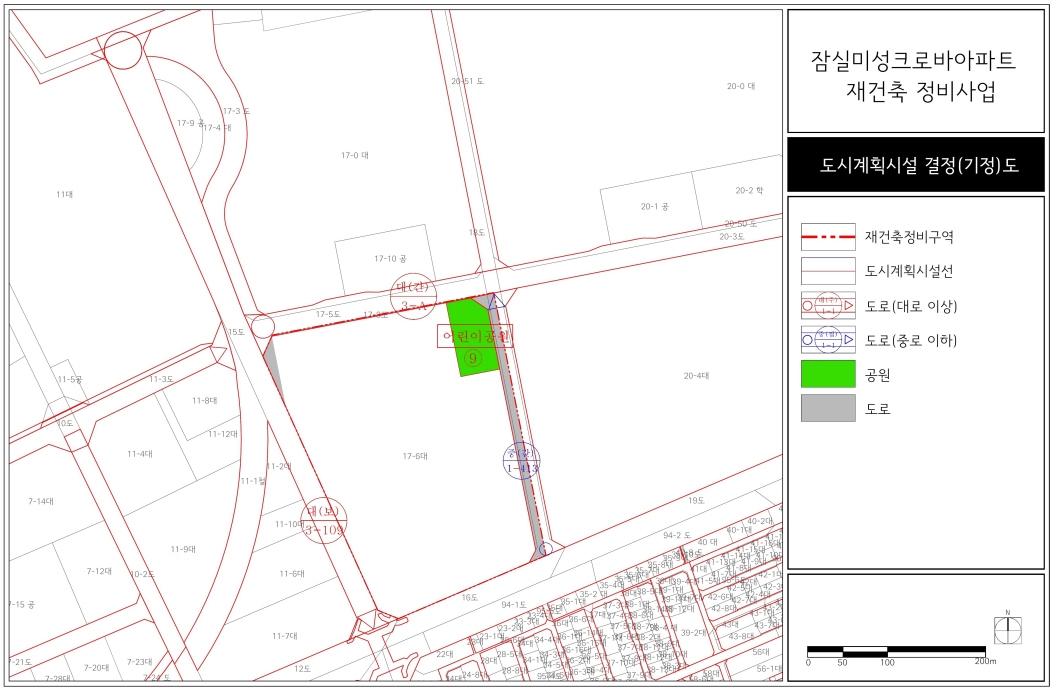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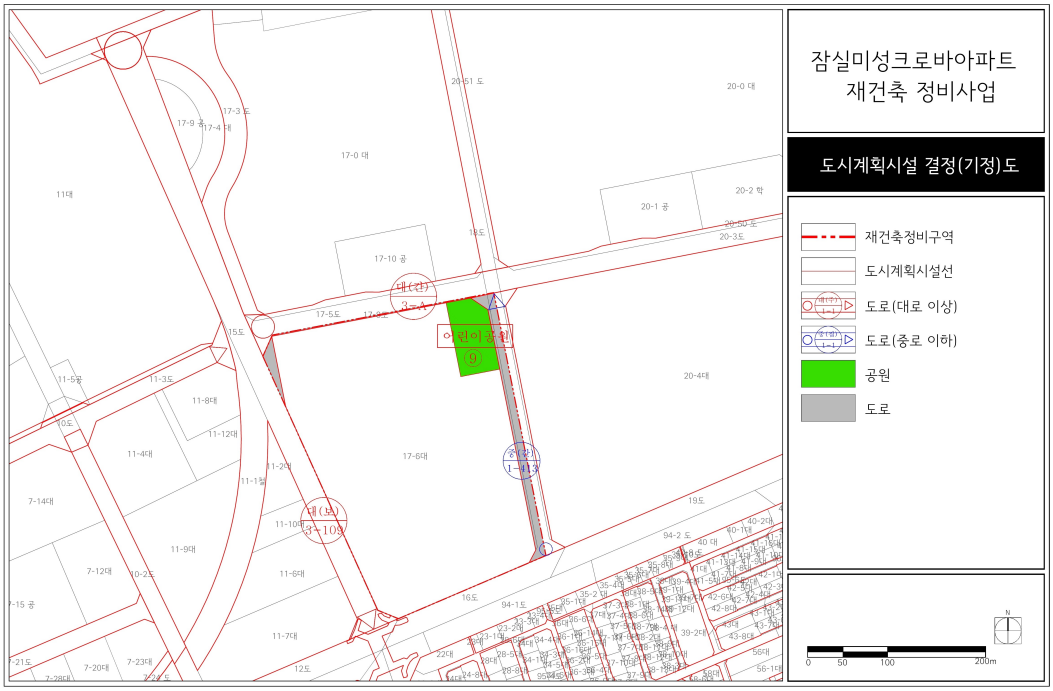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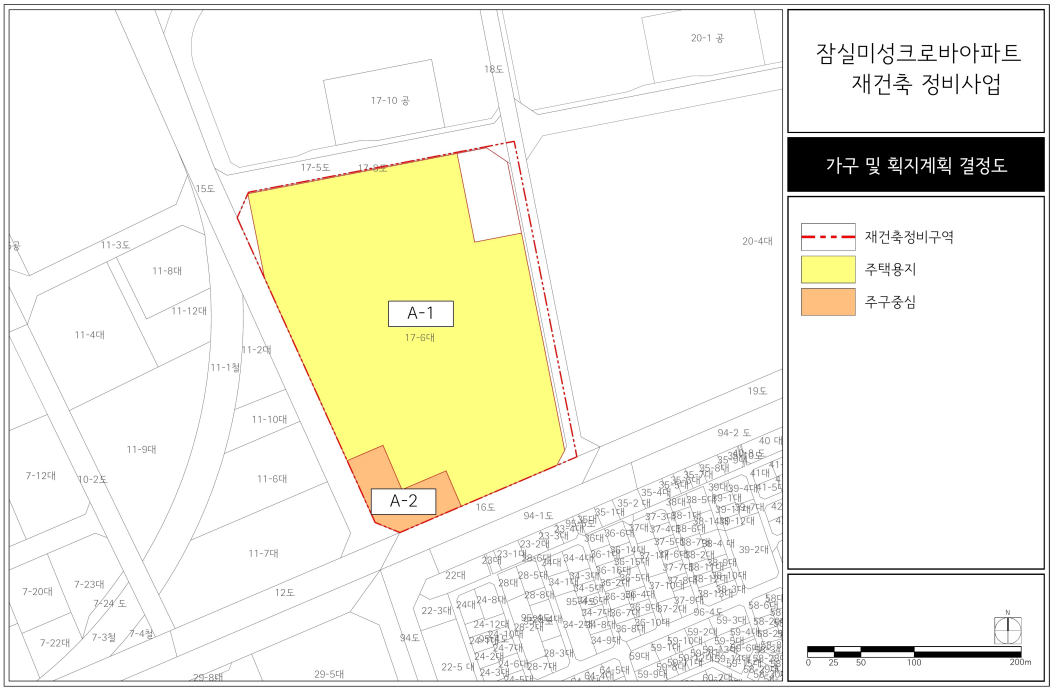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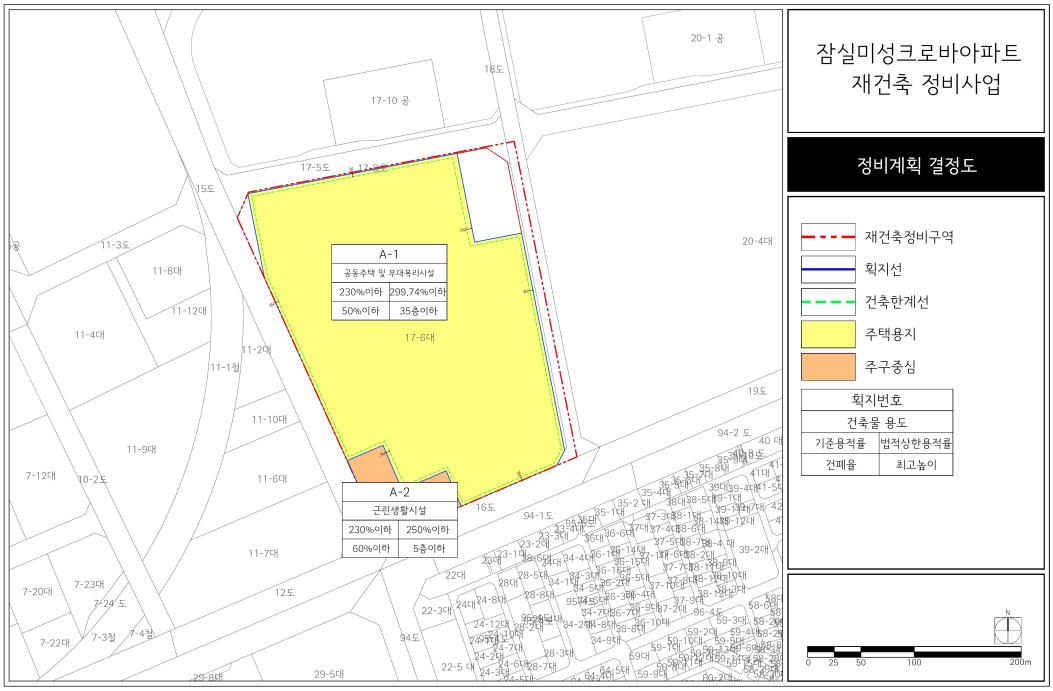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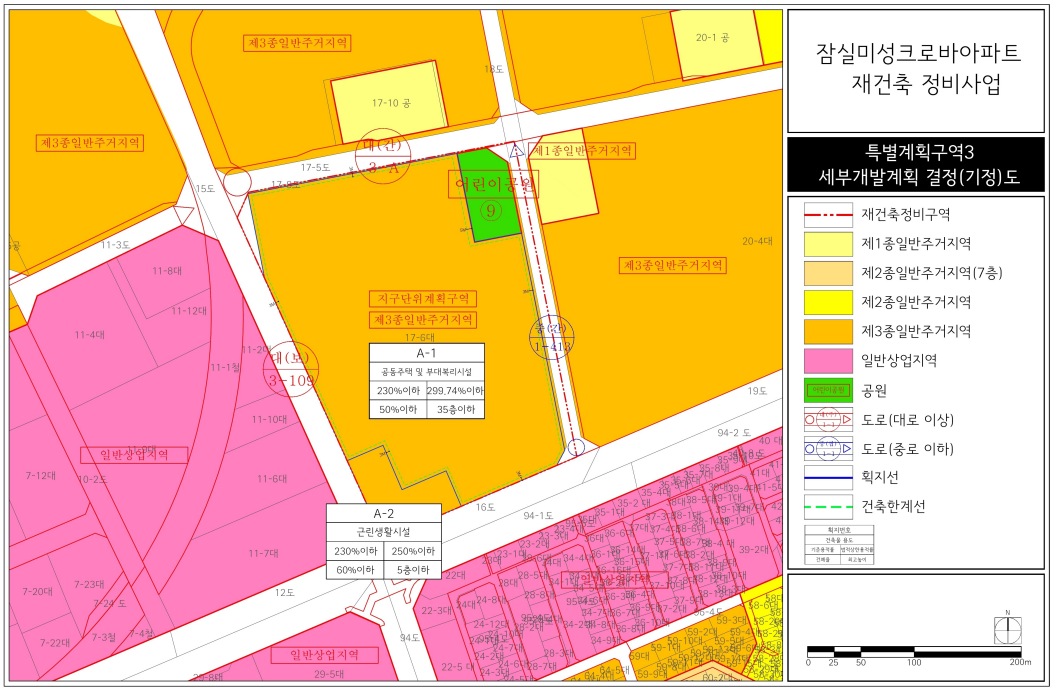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도]

